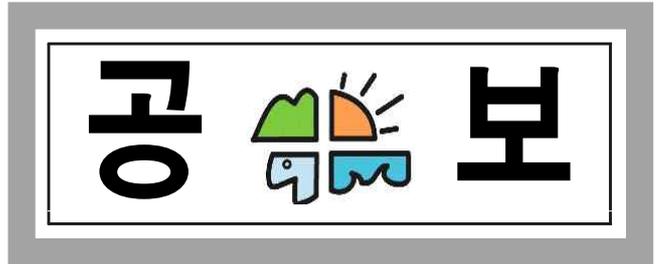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000호 2016년 7월 11일(월)

훈 령

- 속초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공 고

- 2016년 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공고 19

속초시 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이 | *이정수* (직인)



2016. 7. 8 .

속초시 훈령 제 688호

속초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속초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속초시 민방공경보단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방공경보단말"(이하 "경보단말"이라 한다)이란 민방공경보 시설관리 및 경보전달을 위하여 설치된 민방공경보, 중계, 수신단말을 말한다.
2. "민방공경보 중계단말"(이하"중계단말"이라 한다)이란 수신된 경보를 자체 및 산하 민방공경보 수신단말에 전달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3. "민방공경보 수신단말"(이하 "수신단말"이라 한다)이란 수신된 경보에 의해 사이렌을 울리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제3조(설치) 경보단말의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관리요원)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보단말(중계, 수신) 시설 관리는 안전방재과에서 관리·운영하며, 시청 내 중계단말에 대하여는 민방위담당공무원을 시설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동 주민센터의 수신 단말에 대하여는 해당 동 민방위담당공무원을 시설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임무) 중계 및 수신단말 시설관리요원(이하“시설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경보시설의 보안점검 및 출입자 통제
2.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의 경보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지휘 및 보고

제6조(지휘체계) ① 안전방재과장은 경보단말을 지휘·감독한다.

② 민방위담당은 경보단말의 운영에 관하여 안전방재과장을 보좌한다.

③ 안전방재과장은 경보전달임무를 총괄하며 시설관리요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시설관리요원은 안전방재과장의 명을 받아 경보시설을 관리하여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민방위경보통제소(이하“도통제소”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보고체계) 시설관리요원은 시설관리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민방위담당에게 매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고 민방위담당은 이를 종합하여 매주 월요일에 안전방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경보전달체계

제8조(선조치 후보고) 안전방재과장은 시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도통제소에 경보발령을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강원도 비상기획과장을 경유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보발령 시 조치) 안전방재과장은 도통제소 및 시장, 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 주의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시설관리요원의 정위치 배치 및 시설점검
2. 도 통제소 및 시 상황실, 지역군부대로부터의 상황파악
3. 도통제소에 경보발령 준비요청
4. 사용 가능한 마을앰프 방송준비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0조(경보발령 시 조치) ① 안전방재과장은 도통제소로부터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 통제소로부터의 경보발령 확인
2. 도 통제소로부터 경보발령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된 때에는 시설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수동올림토록 조치

② 안전방재과장은 시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상황실 및 지역군부대에 경보발령확인
2. 도 통제소에 경보방송 및 사이렌올림 요청
3. 사용가능한 마을앰프 등을 활용하여 별표 2의 지역통제상황 민방공 방송문안에 따라 방송 실시
4. 시설관리요원은 경보전달 후 도통제소에 보고

제4장 경보단말 운영 및 복무

제11조(운영) 경보단말은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제12조(비상소집 및 근무) 안전방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관리요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1. 도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 군부대장의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있을 때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3. 도지사 및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4. 그 밖에 안전방재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① 안전방재과장은 시설별 통신보안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 시설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방재과장은 자체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경보시설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제한구역표지를 매출입구마다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로 표시하며 창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며 외부침입방지를 위해 건물구조와 높이에 따라 1.5미터 이상 높이로 이중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경보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상황을 별지 1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제14조(물품관리) ① 안전방재과장은 경보단말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② 경보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안전방재과장은 경보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 정기점검) ① 시설관리요원은 자체경보시설에 대해서 매주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경보시설장비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2. 경보시설장비의 정비 상태
3. 경보업무에 대한 보안점검
4. 그 밖에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고 그 주요사항은 도통제소 및 안전방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고장시 조치) ① 안전방재과장은 경보시설장비의 고장 시에 시설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지정 유지보수업체에 즉시 수리,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지정 유지보수업체가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도통제소에 의뢰하여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방재과장은 경보시설장비 고장발생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통제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3. 복구에정일시 등

제17조(기록유지)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출입자통제기록부(별지 제1호서식)
2. 장비정기점검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제18조(관계기관의 협조) 안전방재과장은 정보단말의 운영관리와 민방공경보 전달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도통제소, 지방방송사, 지역군부대, 그 밖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 보 단 말 설 치 지 역

연 번	단 말 명 칭	설 치 지 역	설 치 년 도
1	통제시스템	시청 재난상황실 (속초시 중앙로 183)	2006.12.26.
2	속초시청 경보단말	시청 뒤 (속초시 중앙동 469-11)	2005.12.09.
3	설악동치안센터 경보단말	설악동 치안센터옥상 (속초시 청봉로5길 41)	2006.01.17.
4	평생교육문화센터 경보단말	평생교육문화센터옥상 (속초시 동해대로 4243)	2005.06.08.
5	구 대포정수장 경보단말	구 대포정수장 (속초시 대포동 산44)	2000.08.05.

[별표 2]

지역통제상황 민방공경보방송문안

1. 주간 민방공경보방송문안

가. 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음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적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다. 공습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음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에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과 차량운행 통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마. 제차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음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바. 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 했던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2. 야간 민방공경보방송문안

가. 야간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음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야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등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시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등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장비나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다. 야간공습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음 -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 · 외의 등을 모두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행동요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끈 옥내 · 외의 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 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 유도 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마. 재차경계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음 -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바. 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3. 화생방경보방송문안

가. 화생방경보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생방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상황# 1 화재방작용제 탐지 시, 오염 예상 시 또는 공격 확인 시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우의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호흡기 및 피부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재방대피소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 부는 방향이나 축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지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상황# 2 화재방공격 종료 시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재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재방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립니다.

다. 화재방 경보해제

○○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4. 경보해명방송문안

° 상황# 1 레이더의 허위함적 포착시 (조류떼 포착 등)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된 경계 (공습) 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 상황# 2 적 항공기 귀순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된 경계 (공습) 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 상황# 3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된 경계 (공습) 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에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공군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도주 하였으므로 경계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 상황#4 기타 상황시 (전기누전 등)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된 경계 (공습) 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 상황#5 화생방 오보발령시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지역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 상황#6 민방공경보용 사이렌 오취명시 (통신선로불량 등)

○○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지역에 취명된 경계 (공습) 경보 사이렌은 ○○으로 인하여 잘못 취명된 것이오니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속초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별지 제2호시식]

경보시설정기점검기록부

결	시설관리요원	담당
재		

점검자 :

점검일자 :

년 월 일 (요일)

장 비 별	주요점검사항	점 검 결 과	주요결함사항	조 치 사 항
유 선 자동화장비				
무 선 자동화장비				
사이렌시설				
부대시설				

2016년 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주택법」 제43조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지원단지를 결정하였으나, 공동주택 단지내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발생하여,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따라 2016년 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11.

속 초 시 장

1. 지원대상

○ 대상단지 : 10년 이상 단지 (시설보수)

구 분	단지수	세대수
계	85	9,676
아 파 트	36	8,165
연립주택	49	1,511

- ① 2016. 3.17.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보수 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자는 제외
- ②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는 지원 제외(속초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3조)

2. 지원금액 : 38,812,000원 (시설물 유지보수)

3. 지원기준

규 모(세 대 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90%이하	5백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1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1천5백만원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2천5백만원
100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3천만원

※ 총사업비 : 지원금액+자부담금액

4. 지원항목

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나. 경로당 유지보수

다. 단지내 보·차도(주차장 포함) 등의 유지보수

라. 건축물외(저수조포함)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마.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바.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사.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

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주택법 45조의3 및 건축법 제 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자.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차. 기타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의사항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5. 분야별 지원기준

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노후도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다.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주차장을 말한다.

라.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상·하수도시설 및 저수조는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

6. 세부추진일정

- 가. 2차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 2016. 7. 11.
- 나. 지원신청서 접수 : 2016. 7. 11. ~ 7. 25.
- 다. 현지조사 : 2016. 7. 26. ~ 7. 29.
- 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16. 8월 중
- 마.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 2016. 8월 중
-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완료 : 2016. 12월중

7. 지원신청

가.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16. 7. 11. ~ 7. 25.**

나. 신청자격자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는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가 연명·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으로 신청

다. 제출처 :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라. 신청시 제출서류

- 1)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

3) 사업계획서(아래의 사항을 기재함)

가)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

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라) 자기자본 부담액

마) 지원 사업기간

바)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 033-639-2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요(목적, 내용, 사업기간)	총소요예산/ 자기자본부담액	비 고
계			
기 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속초시장(건축디자인과) 귀하

-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서 내역서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